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외 7명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장미경·김민성·김원섭·김정도·박교상
박세채·이상호·이정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 가. 중앙부처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등의 재해·재난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나. 구미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위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 내용 개정(안 제3조)
-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안 제4조)
-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한도 상향(안 제5조)
- 라. 특례보증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설(안 제6조)
- 마.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내용 개정(안 제8조)
- 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 신설(안 제10조,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 제24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착한가격업소”란 제1호에 따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8.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와 협업화 지원
4.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7.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4조를 제8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3호 중 “4등급”을 “3등급”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한도: 1인당 7천만원 이내

제5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
3. 경영 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시장은 제3조 및 제10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년창업자”란 만 39세 이하 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 이하 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		
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 는 자		<삭 제>		
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 이 지나지 않은 자		<삭 제>		
<신 설>		7. “착한가격업소”란 제1호에 따른 외식업, 이·미용업, 세 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서비 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 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 을 통해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 설>		8.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와 협업화 지원
4.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7.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4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 제1호 이외의 소상공인

②·③ (생략)

제5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생략)

②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제3호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 삭 제

2. (생략)

3.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4 등급 이하일 것

4. 5. (생략)

③ (생략)

<신 설>

제8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 (현행과 같음)

3. ----- 3
등급 -----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제6조(특례보증 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과 나목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상공인: 1인당 3천만원 이내

나. 청년창업자: 1인당 5천만원 이내

2. (생략)

② (생략)

제8조 (생략)

<신설>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특례보증 지원내용) ① --

-----. <단서 삭제>

1. 지원 한도: 1인당 7천만원 이내

<삭제>

<삭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

<신 설> <u>제9조</u> · <u>제10조</u> (생 략)	<u>3. 경영 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지원</u> <u>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u> <u>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11조(위탁) 시장은 제3조 및 제10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u> <u>제12조 · 제13조</u>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간 : 2023년~2027년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할 경우 비용 추계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8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 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800,000
기 타							
합 계		36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1,80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담당 김혜영 (054-480-26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200\text{억} \times 0.8\% \times 1\text{년} = 1.6\text{억}$ * '23년 특례보증액예상 (200억)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 인건비(4명) 및 운영비(홍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200,000천원